



2021.11.18(목) 15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10호

1부 보호소 내 고문과 학대 피해자 증언

- 보호소 인권침해 피해자

**2부 인권침해 문제점과 근절을 위한 대책,
국제인권규범과 해외사례**

-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심아정 활동가 (화성보호소방문모임 마중/W31)
- 김지림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온라인 생중계 병행
: 채널 추후 안내
- 참가신청은 아래 링크로
해주세요.
<https://bit.ly/freeM1118>
- 대책위 참가단체를 모집 중
입니다. 가입 및 후원 문의
jacathid2021@gmail.com

* 새우껍기 고문피해자 M씨 치료와 생활 지원을 위한 모금에 함께해 주세요.
하나은행 162-910026-28504 (예금주: APIL)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인가, 강제수용소인가

- ‘새우껍기’ 고문을 비롯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21. 11. 18(목) 15시~17시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
- 주최: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김세진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시간	주제	제목 / 발표자
1부 15시~16시	보호소 내 고문과 학대 피해자 증언	M씨, 사다르씨
	질의, 응답	10분
2부 16시~17시	인권침해 문제점과 근절을 위한 대책, 국제인권규범	‘M씨’사건의 위법성과 보호소 내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제도적 문제점 (이한재 변호사)
		‘비국민’의 시간이 고여 있는 장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계류된 삶과 구금의 실태 (심아정 활동가)
	질의응답 및 자유 토론	화성외국인보호소 사건 관련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점 (김지림 변호사)
20분		
마무리		

‘M씨’ 사건의 위법성 및 외국인보호소 ‘강제력 행사’ 의 제도적 문제점

이한재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1. 화성외국인보호소 ‘M씨’ 학대사건의 진행 과정

가.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소 구금

피해자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피해자는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었고, 2017. 10. 에 입국하여 같은 해 12. 에 난민신청을 하고 이후에는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체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을 놓치는 등의 사유로 2021. 3. 4.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되었습니다.

나. 코로나-19로 인해 은폐된 기간

피해자에 대한 학대사건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외부 왕래가 차단되었던 기간동안 일어났습니다. 2020년 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외국인보호시설은 최대한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소의 밀집도를 낮추려는 노력 대신 외국인들을 최대한 가둬두고, 모든 왕래를 차단하여 문제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국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보호외국인의 1인당 평균 보호기간이 치솟았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1인당 평균 보호기간은 2018년 8.2일, 2019년 7.5일에서 2020년 25.7일, 2021년(6. 30. 기준) 32.3일까지 늘어났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2020.3.부터 면회를 전면 차단했고, 2020. 5. 6.부터 면회 시간과 대상을 매우 좁혀 일부 면회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2020. 8. 24. ~ 2020. 10. 12. 까지, 2020. 11. 24. ~ 2021. 6. 13. 까지 면회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보호소에는 해외 교통편 등의 문제로 기약 없이 갇힌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부와의 소통은 극도로 제한되고, 감시의 눈길이 닿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는 모두 끔찍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씨의 사건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면회가 재개된 6. 14. 직후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다. 6. 22. 최초의 변호사 면담과 서류 전달

M씨의 난민절차를 진행했던 소수자난민네트워크를 통해 M씨의 사연이 처음 알려졌습니

다. M씨는 구금 이후 6. 22. 처음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변호사 특별면회도 일반면회실에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흐린 아크릴판이 덧씌워져 면회용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으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M씨는 바로 변호사를 믿고 품속에 간직하던 ‘특별계호통고서’와 함께 그간의 가혹행위에 관한 자필 진술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와 같이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제때 대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M씨의 경우에는 최초의 가혹행위가 발생한지는 3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혹행위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던 점 때문에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M씨는 면담 12일 전이었던 6. 10.에도 이미 가혹행위를 겪은 상태였고, 손목과 발목에는 묶일 때 발생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 CCTV 확보를 위한 대응 - 인권위 진정, 법원 증거보전 절차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외국인보호소의 학대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나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CCTV의 보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보호소의 독방과 복도 등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촬영물은 규정상 90일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영상을 보관할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 1달 내외의 기간만 겨우 저장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덧씌워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고, 무사히 보호소로부터 자료제출까지 받지 않고서는 CCTV 영상이 영구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CCTV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정 부분 CCTV를 보관해 두도록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 법원 절차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민사소송 전 증거보전’이라는 특이한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M씨가 전달해준 서류와 진술서를 모두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로 하고, 보호소의 CCTV 용량 사정까지 언급하며 왜 이것이 시급한지 썼습니다. 신청 후 일주일도 되지 않은 6. 30. 에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도 받았습니다. 보정명령 없이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21. 7. 15. CCTV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얻어낸 자료를 보고 저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집 시간 분량의 해당 영상에는 줄곧 빈 방만 등장했습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했던 6. 8. 및 6. 10. 해당 시간, 해당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M씨가 받은 공문서인 ‘특별계호통고서’를 보고 일시 장소를 정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특별계호통고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M씨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M씨는 “1분 1초가 모두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괴롭고 슬픈 이유였지만, 그의 구체적인 기억 덕분에 증거를 다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두 번째 증거보전 결정은 2021. 8. 11. 에 이르러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3. 31. 부터 6. 10.까지, 당사자가 기억하고 있는 7개의 일시 장소, 총 400시간 분량에 이르는 CCTV 영상녹화물 전체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결정의 대상이 된 영상의 대부분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다행히 6월의 자료는 존재했습니다. 8. 26., 드디어 M씨가 등장하는 CCTV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면담 당일부터 두 달이 넘도록 노력한 끝에 가혹행위의 직접 증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 보호해제를 위한 다양한 노력

화성외국인보호소와는 이미 사건을 인지한 당시부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본격적으로 문제를 알리기 전에 당사자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치인 ‘일시 보호해제’의 경우, 법률상 법무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무부와 의 소통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사자와 처음 만난 6. 22. 에는 M씨의 담당 매니저인 보호소 실장과의 면담을 했습니다. 보호소 실장은 상황을 묻는 변호사에게 ‘조사관도 아니면서 왜 캐묻나. 전부 적법하게 처리한 것’ 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상황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21. 7. 8. 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장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장과 사범과장은 대리인들을 불러놓고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바빴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소장은 ‘새우껍기’ 가혹행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리인들은 당장 M씨를 위한 조치를 요청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빠른 외부 병원 진료와 보호해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M씨에 대한 외부 병원 진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1. 7. 29. 수원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했고 8. 18. 에는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불허 사유로는 ‘인도적 사유가 불충분하다’는 의미 없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021. 9. 17. 에는 보호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이민조사과 사무관과 이민조사과장을 면담했습니다. 이들은 9. 30. 까지 보호일시해제 및 고발 취하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에 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힌 바 없습니다.

2021. 9. 28. 법무부 인권국장과의 통화가 있었고, 바로 법무부 인권조사과의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단은 조사를 시작하는 9. 29. 한 차례 당사자를 면담한

이외에는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단과도 사건에 관해 아무런 소통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자 10. 26. 에는 대리인들을 불러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었고, 대리인단의 항의에 10. 28. 한 차례 더 당사자를 면담했으나 이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면담 다음 날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11. 1. 발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제도 개선 등 장기대책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보호소 이감을 제안하거나, 제3국으로의 출국 협조를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이 계속되었습니다.

6. 23. 제기되었던 인권위 진정에 대한 결정이 2021. 11. 16. 에야 나왔습니다. 대리인단은 인권위에 서면을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파악한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는 한편, ‘보호해제’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보호해제는 물론이고 ‘가해자와의 분리 노력’ 혹은 ‘의료접근’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고조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21. 10. 19.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통하여 다시 보호해제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스스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의 위법성

「출입국관리법」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19진정0360200결정은 물론 M씨에 대한 21진정0451000 사건에서도 ‘새우껍기 고문’과 ‘발목수갑’은 모두 위법하고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 보호장비를 이용한 고문

1) ‘새우껍기 고문’



- (1) 2021. 5. 8. 00시 ~ 2021. 5. 15. 20시 사이 불상의 시간
- (2) 2021. 6. 8. 00시 03분 ~ 00시 25분 (약 21분)
- (3) 2021. 6. 10. 10시 32분 ~ 13시 36분 (약 3시간 4분 연속)
- (4) 2021. 6. 10. 15시 51분 ~ 17시 11분 (약 1시간 20분 연속)
- (5) 2021. 7. 15. 불상의 시간

수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포박하고, 포승을 이용하여 발목을 포박하여 손목과 발목의 포박을 등 뒤에서 포승으로 연결하여 바닥에 눕히는 고문, 통칭 “새우껍기” 행위의 모습은 CCTV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CCTV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3차례로, 6월 8일과 6월 10일 오전, 오후입니다. CCTV가 확보되지 않은 5월 중순 불상의 시간, 그리고 7월 15일에 있었던 고문 행위는 법무부 자체 조사 과정은 물론 인권위 진정 과정에서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
다.

2) ‘발목수갑’과 ‘수갑’ 혼합사용

2021. 4. 6. 01시 00분 ~ 03시 00분 사이 “발목수갑”을 사용하고, 손에는 “수갑”을 사용하여 사지를 구속했습니다. 이 때에는 손목과 발목이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발목수갑의 경우 이미 2020년 인권위 권고를 통해 법에 근거 없는 불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장비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용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CCTV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법무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스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과도한 강제력 행사

2021. 3. 31. 10:30경을 시작으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은 과도한 육체적 제압 행위를 반복해왔습니다. 외국인보호소 직원들 10여명이 달려들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슴, 다리, 머리, 목 등 부위를 심하게 압박당하였습니다.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M씨 한 명에 대하여 과도한 강제력이 행사되면서 피해자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면담 과정에서 이 상황을 “I can't breath”라고 하면서 사망

했던 미국인처럼 자신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4) 법령에 없는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의 사용

공권력으로서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려면, 매우 엄격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제력 행사의 방법과 절차가 법률에 모두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두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는 적절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그 사용 가능한 방법과 절차, ‘종류’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적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98조 제1항에서 사용 가능한 보호장비의 종류를 8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56조의4에서 세 가지 보호장비 (수갑, 포승, 머리보호장비)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도 다른 보호장비를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장비는 법령상 ‘보호장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이외의 장비를 사용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케이블타이와 박스테이프의 사용에는 당연히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그 자체로 굴욕감을 주는 장비로서 당연히 사람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가장 문제적인 것이 바로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아울러, 진정인이 반복적으로 보호장비를 스스로 해제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진정인 4가 2021. 6. 10. 12:51경 머리보호대를 고정하며 테이프와 케이블타이를 사용한 방법이 진정인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법한 장비를 사람에게 사용하였는데, 인권위가 이를 ‘필요성’을 감안할 때 정당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헌법소송, 국제인권매커니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제기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나. 징벌적 목적으로 반복된 독방 구금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징벌’이나 ‘처벌’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의 모든 강제력행사는 법 제56조의4에서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독방구금(특별계호)는 마치 그 자체로 징벌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어떠한 규정 위반 행위에 며칠간의 특별계호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무는 특별계호를 특정 행위에 대한 징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대목에 있어서도 매우 반인권적인 방식으로 외국인보호소

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과거 행동에 대한 불이익의 성격으로 특별계호가 실시된 경우 그 사람을 자·타해, 도주 등의 위험 및 우려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미의 특별계호와 성격을 달리”한다면서 “당사자의 이익제기 가능성 보호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수준에 준하는 이유제시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외국인보호소가 보호외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며, 심지어 출입국 관련법에는 그러한 징계를 위한 아무런 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정도의 수준으로” 통지를 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권력 발동을 위하여는 법적인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고, 발동을 위한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특별계호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제72조(특별계호) 제7항은 “특별계호의 방법은 독방에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계호의 기간을 원칙적으로 5일 이내로 정한 것은 독방 수용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확성외국인보호소장은 진정인에게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특별계호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규에 규정된 특별계호 기간의 제한을 일탈하여 징벌 목적으로 진정인을 독방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의 문언은 해석상 연속적인 특별계호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으로는 이해되지

번호(No.)	사유	장소	기간	작성일	집행자 서명
2100158HS	난동	203호	03/23-03/25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103호	03/31-04/02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101호	04/05-04/07	06/03	없음
2100158HS	난동	102호	04/09-04/11	06/03	없음
2100158HS	난동	202호	05/06-05/11	06/03	없음
2100158HS	기타	202호	05/11-05/12	06/03	없음
2100158HS	기타	202호	05/12-05/15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303호	05/17-05/19	06/03	없음
2100158HS	지시불응	303호	06/02-06/04	06/03	없음
2100158HS	기물파손	없음	06/03-06/08	06/14	없음
2100158HS	기물파손	202호	06/08-06/12	06/14	없음
2100158HS	기물파손	202호	06/09-06/13	06/14	없음
2100158HS	1호(번역)	없음	07/01-07/06	10/05	없음
2100158HS	1호(파손)	없음	07/06-07/10	10/05	없음
2100158HS	2호(지시)	없음	07/10-07/12	10/05	없음
2100158HS	1호(난동)	없음	07/15-07/20	10/05	없음

않으므로 특별계호 기간 중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하여 연속적으로 특별계호를 반복 실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초헌법적인 해석까지 동원하여 외국인보

호소의 행태를 정당화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방 구금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를 법률이 아닌 훈령에 불과한 ‘외국인보호규칙’에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의 의심이 있습니다. 이를 빼놓고 생각하더라도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의 “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문언은 쉽게 ‘최장 10일’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심지어 외국인보호소의 실무도 그래왔으며, 법무부 스스로도 그렇게 해석하여 내부감사에서도 ‘10일을 초과하는 특별계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러한 중요한 제도에 대하여 매우 반인권적인 해석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다. 독방 구금의 절차적 문제

「외국인보호규칙」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특별계호 신청서, 특별계호 지시서 등을 발급해야 하고, 중점관리외국인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에 관한 경비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72조제4항은 "보호근무자는 보호외국인을 특별계호 조치할 때 그 사유를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씨는 독방에 구금될 당시 통역을 통해 그 이유를 설명받은 경우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왜 특별계호가 되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며, 문서상으로 확인해 보아도 그 사유가 단순히 “기타”로 되어 있는 등 충분한 사유 설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은 인권위 진정절차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문서 자체의 형식적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을 해왔습니다. 1) 문서에 있는 집행자 서명란이 모두 비워져 있으며 2) 구금 장소와 기간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복되어 있고, 3) 문서의 작성이 특정 일자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으며 4) 문서 상단에 기재된 번호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법무부 인권조사과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만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특별계호 통고서 상 2021. 6. 9~6. 13.의 기간은 오기로 확인됨”이라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기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쓴’ 공문서를 생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하기까지 했는데 ‘실수’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하필이면 ‘특별계호의 10일 제한’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특별계호 관련 문서에서 ‘오기’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두 기관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외국인보호소의 변명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구금 장소, 기간이 틀린 부분은 모두 ‘호실 이동’ 과정에서 실수이고, 문서 작성일이 같은 것은 해당 문서 양식상 출력일이 ‘작성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서 상단 번호는 문서번호가 아니라 M씨에게 부여된 일련번호라고 했습니다. ‘집행자 서명’은 양식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이런 성의없는 변명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 2차 가해

고문 사건은 그 자체로 끔찍하지만, 이 사건이 바깥으로 알려진 이후의 법무부 대응 역시 그 자체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언급한 대리인단과 이민조사과의 9. 17. 면담 이후, 9. 30. 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뒤 M씨를 ‘괴물로 만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9. 29. 대리인단의 첫 기자회견이 있기 직전인 9. 28. 화성보호소는 기자들에게 M씨의 이른바 ‘난동’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들을 유포합니다. 이 자료에는 사건과 아무 관계 없는 M씨의 과거 전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허락 없는 영상촬영물의 유포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법무부’명의로 만들어 당당히 ‘보도자료’로 유포하였다는 점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피해자와 대리인단은 이러한 법무부의 2차 가해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스스로 보호소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이 보도자료는 여전히 법무부 홈페이지에 당당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제목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입니다.

3.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이 사건에 얽힌 외국인보호소의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외국인보호소를 ‘개방형 시설’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이러한 태도는 ‘유체이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해자들에게 “제도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 제도를 고치겠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 그간 밝혀진 1) 고문행위 등 강제력 행사 2) 반복적, 징벌적 특별계호, 3) 그 절차적 위반 4) 법무부의 2차가해행위 등은 이미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불법적, 반인권적입니다. ‘제

도 개선 노력’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도구로 소진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보호소는 그 최초의 보호명령 단계에서부터 해제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아닌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강제력 행사’ 관련 제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도에 있지 않다고 보지만,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제도적 문제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보호소와 관련 제도가 엉망진창인 것이 분명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행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도소보다도 훨씬 더 인권침해적인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이 부분 제도만이라도 이 기회에 꼭 개선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선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고, 국회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개정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도 시민사회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하에서는 법령 개선에 대한 개략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가. 일반론 : 강제력 행사 종류별 분리하여 요건과 절차를 규정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제56조의4에서 모든 종류의 강제력 행사를 한 조문에 규정하여 자의적 공권력행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분리하여 각 공권력 행사 방법마다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합헌적인 법률의 최소한입니다. 이는 이미 교도소 등에 적용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실현되어 있는 기본적인 규율 방식입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이 아니라 출국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강제력 행사에는 더욱 세심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보호시설은 교정시설과 같은 실질적인 구금시설로 운영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호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는 제도는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을 기준으로 수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보호시설’을 만들 것이라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다수인 보호시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수인 보호시설로서 외국인보호소는 ‘인권담당관’ 등의 형태로 별도의 ombudsman 제도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어떠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아무런 외부견제장치 없이 고립된 외국인보호소 안에서는 인권침해가 반복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 보호장비에 관한 규정

1) 보호장비 사용의 원칙적 금지

보호장비 사용은 신체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로서 엄격한 절차와 요건 하에 운영되어야 합니다. 보호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못한다면,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호장비 사용은 금지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예외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2) 보호장비의 종류 및 각 사용 요건을 명확히 규정

보호장비 사용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의 근거규정에서는 보호장비 사용이 가능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장비의 종류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아무런 제한 없이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규정은 위헌의 의심이 있습니다.

3) 발목 보호장비와 머리보호장비를 제외

보호장비의 종류에 관하여, 이미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장비 이외의 것을 추가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를 추가하거나, 포승을 통상의 사용 방식을 벗어나 발목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머리보호장비’ 역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 장비는 그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경우 머리보호장비 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15년 전부터 ‘안면보호장비(머리보호장비의 구법상 명칭) 폐지’를 권고해 왔습니다. 대규모 교정시설에서마저 머리보호장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위험한 장비라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시설에서마저 이러한 장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보호장비 사용 시간의 제한을 마련

현행 형집행법상 교정시설에는 보호장비 사용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장기간, 무기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1년 넘는 기간동안 연속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건이 있었고(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163 결정), 2019년에는 구치소에서 3박4일간 보호장비가 사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10. 6. 결정 19진정0858500).

급기야 2020년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끝에 노역수형자가 사망한 사건(20진정0312400 참고)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무부 내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정시설도 아닌 외국인보호시설에 이러한 인권의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개정안 예시

현행법	개정안
<p>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p> <p>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 <p>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갑 2. 포승 3. 머리보호장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장비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p>제56조의11(보호장비의 사용)</p> <p>① <u>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보호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호시설 밖의 장소로 피보호자를 호송하는 상황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명백한 때.</u> 2. <u>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명백한 때</u> 3. <u>위력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u> <p>②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시설의 안에서 피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피보호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p> <p>56조의12(보호장비의 종류)</p> <p>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갑 (단 발목수갑은 제외한다.) 2. 포승 <p>② 보호장비의 각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방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③ 소장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서면통지의 방법, 통역,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④ 의무관은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p>

<p>[신설]</p>	<p><u>로 확인하여야 한다.</u></p> <p>⑤ 그 외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제56조의13(보호장비 남용 금지)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u>사유가 없으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u></p> <p>② 보호장비 사용시간은 <u>1시간 이내로</u>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u>1회당 30분</u>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56조의11 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u>계속하여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u></p> <p>④ <u>각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 방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되, 굴욕적이거나 비인도적인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u></p> <p>⑤ 보호장비는 <u>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u></p>
-------------	---

다. 독방 구금에 관한 규정

1) 법률에 근거규정 신설

현행 ‘특별계호’는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에서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유일한 법률상 근거입니다. 그 성격과 목적이 모호하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법률로서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으며, 특별계호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면 별도 조항 신설이 필수적입니다.

2) 단기의 ‘진정실’로 규정

실질적으로 ‘징벌방’처럼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위헌, 위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진정실’로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진정실’ 규정은 이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외국인보호소의 독방은 최초의 입실 명령 단계에서 최대 24시간 이내에서, 연장은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최대한 연속하여도 3일을 상한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요건과 절차를 정비

현재와 같이 남용적, 징벌적 독방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상 그 요건 역시 크게 좁혀야 합니다. 자살,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상황을 제외하면 보호외국인을 ‘진정실’에 격리해야 할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입소시 서면통지와 의견수렴을 의무화 하고, 통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도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4) ‘외부 전문가 개입’을 법령상 명문화

3일의 제한을 넘겨서도 다시 격리 사유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유만 바뀌어서 다시 3일의 독방 구금을 연장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보호소는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제도를 가지지 않은 채로 강제력 행사만으로 문제를 가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문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하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외부 전문가의 개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진정실 수용> 에 관한 개정안 예시

현행법 [신설]	개정안 2.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p>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p> <p>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주의 방지,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 <p>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3.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경우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경우</p>	<p>56조의10(진정실 수용)</p> <p>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시설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호자를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하지 못한다.</p> <p>②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실(일반 보호거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피보호자가 안전하게 진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거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할 수 있다.</p> <p>1.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명백한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때</p> <p>③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 주어야 하며, 서면통지의 방법, 통역,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의무관은 진정실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진정실 수용은 징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소장은 진정실 수용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진정실 수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p> <p>⑧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2회 이상 반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보호외국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보호외국인의 보호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p>
--	---

‘비국민’의 시간이 고여 있는 장소,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계류된 삶과 구금의 실태

심아정(화성외국인보호소면회활동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W31)

‘보호’라는 이름의 ‘구금’

화성외국인보호소 정문 표지판에는 ‘구금’의 뜻을 지닌 Detention이 ‘보호’로 번역되어 있다. 이곳에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구금’되어있는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기간이 지난 미등록 이주민들이다.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귀국을 미루다가 체류기한을 놓친 이들, 받아온/도래할 박해를 피해 난민 신청 중인 이들, 언어의 한계로 비자연장 기한이나 난민신청 기간을 놓친 이들,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도 섞여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귀국 항공편을 기다리는 이들까지 급증하면서 한때 보호소는 북새통을 이뤘다. 마중이 2021년 8월 법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727명 정원인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수용 인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1,070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미등록 이주민의 대부분은 여러 사정으로 체류기간이 지난 사람들이지 범죄자가 아니다. 이주민의 보호는 행정적인 필요에 따른 ‘비형벌적’ 인신구속에 해당된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었고, 구금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구금으로 이어져 결국엔 징벌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보호소 내 강제퇴거대상자는 귀국을 준비하는 단기 구금자와 난민신청 중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는 장기구금자로 거칠게 나눠볼 수 있다. 후자라면 사실상 ‘무기한’ 구금에 가깝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3개월 이상 구금된 이들은 총 98명이다(3~6개월 58명, 6개월~1년 28명, 1년 이상 12명) 감옥생활에도 최소한 ‘형기’라는 게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에는 기약 없이 유예된 삶들이, 그리고 그들의 시간이 고여 있다.

‘상당한 재량’이라는 모호한 권력

구금된 이주민에게도 ‘신체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데, 출입국 통제는 ‘국가 주권’의 행사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껏 입법 및 집행단계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왔다. 이주구금제도에서 인권문제는 다른 아닌 ‘신체의 자유’와 ‘국가 주권의 재량’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¹⁾ 실제로 외국인보호소 면회활동 과정에서 보호소에

1) 김진 외, 「한국 이주구금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공익과 인권』 (2020년) 51쪽.

서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이나 심지어 청원경찰에게도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게 되었고, 때로는 그들의 ‘재량’이 생사여탈권처럼 행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1년 9월 27일, 보도를 통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징벌방’이라 불리는 독방에서 ‘새우껍기’ 고문을 당한 M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의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이토록 잔인한 범죄가 인간을 대상으로 자행될 수 있었나’가 아니라, ‘자행된 폭력이 더 이상 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법적 절차와 권력 장치들은 무엇인가’로. 그리고 그 핵심에는 ‘재량’이라는 모호한 권력이 자리한다.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보증금, 부르는 게 값이다?

‘보호일시해제’란 강제퇴거대상인 보호외국인이 주로 신병치료, 난민소송 준비, 출국 전 신변 정리 등을 이유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구금에서 풀려나 보호소 밖에서 지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일시해제의 허가를 위해서는 신원보증인과 보증금, 확실한 거처 등이 요구되는데, 보증금은 300만원에서 최대 2천만 원에 이른다. 장기구금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도와줄 가족과 지인이 없는 이들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보호일시해제를 엄두조차 내지 못할 뿐 아니라, 보증금 부과가 오로지 ‘담당자 재량’에만 맡겨져 있고 공개된 기준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적이다.

절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을 때 ‘재량’이 비집고 나온다. ‘국가주권의 상당한 재량’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 동료 활동가는 출입국에 가면 보증금 가격을 ‘후려쳐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기준에 따라 책정된 보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흥정에 가까운 협상을 통해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다. 보호소와 출입국 공무원들의 재량, 즉 어떤 순간에 전적으로 ‘주권자’ 행세를 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은 법률적 ‘가치’를 갖는 결정은 아니지만, 법률의 ‘힘’을 갖는다.²⁾

보호일시해제를 허가 받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출입국에 찾아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3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한다. 보호일시해제된 이들에게 노동은 금지되어 있다. 출입국 직원은 휴대폰을 개통하면 반드시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지만, 미등록이니 휴대폰은 개통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 전화를 개통했다 치더라도 노동이 금지된 상태에서 통신비는 어떻게 내고 생활은 어떻게 꾸려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재량이 빚어낸 모순된 현실은 보호일시해제된 이주민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생활 속 ‘불안’이 된다. 보호일시제도는 풀려난 이들이 보호소 ‘밖’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제도다. 보호일시해제는 적절한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없다.

4년 8개월 최장기 구금자 O 씨의 피해는 해소되지 않았다

2) 아감벤은 이러한 힘을 ‘법률 없는 법률의 힘’(법률의 힘)이라 부른다.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향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년), 79쪽.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의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조항이다. 구금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법무부 이외의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적 조항에 대해서는 세 번이나 위헌심판제청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위헌의견(5인)이 합헌의견(4인)보다 다수였지만, 위헌정족수(6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판단한 의견도 현행 이주구금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³⁾

현행 난민법 제3조는 난민인정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신청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강제송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비준한 국제법 ‘난민협약’ 역시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애초에 송환 불가능한 사람들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겠다는 기괴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돌아갈 수 없는 저마다의 이유를 가진 난민 신청자들에게는 사실상 기약없이 갇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이들은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져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난민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길게는 수 년씩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지낸다.

실제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4년 8개월 동안 최장기구금을 당한 O 씨는 구금 중 난민 재판에 호송해 달라는 요구를 “호송가능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소 측에 의해 거부당했고, 네 번의 패소를 겪는 동안 단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할 수 없었다. 2017년, 보호소 측의 재판 호송거부로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뒤에야 그는 ‘보호해제’되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는 “화성보호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인용할 경우, 다른 난민 신청자의 장기구금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후폭풍이 불 것을 우려해 현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O 씨의 보호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O 씨가 이미 보호소를 나왔기 때문에 재판 호송 거부처분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⁴⁾ 그러나 보호소에서 풀려난 것만으로 무려 4년 8개월이라는 구금의 시간을 겪은 O 씨의 피해가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현재의 판단에도 여전히 커다란 의문이 남는다.

출입국관리법, ‘재량’이 아닌 ‘의무’라는 전복적 발상

최계영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4항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행정청에 ‘재량’을

3)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재판관 김창중,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4) 박주희, 「『살해 협박 피해 한국행』 재판 7년 만에 법정서 모국어로 말했다」 『한국일보』 (기사입력일 2021.8.28).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보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⁵⁾ 이는 이주구금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즉 출입국 통제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므로 입법과 집행의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암묵적인 이해를 그 토대에서부터 흔드는 전복적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재량’이 아닌 ‘의무’로서 출입국관리법의 각 조항을 검토하는 새로운 시각의 확보는 국가의 주권행위와 신체적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며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법적 실천의 의지라고 말해 볼 수 있겠다.

한국사회의 혐오와 편견이 응축된 ‘감옥 속 감옥’ - HIV감염인 Y의 격리생활

보호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 외에도 누군가 소란을 피웠을 때 보내지는 ‘징벌방(독방)’이 있고, 구금된 이들 사이에서 ‘VIP룸’으로 불리는 가족실(격리실)이 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 3층의 격리실에는 8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다른 사람과의 직접 대면이나 접촉이 차단된 채 격리구금 되어있는 HIV감염인, Y 씨가 ‘있다’.

보호소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 입소 시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압수, 보관된다. 일주일에 한 번 5분 정도 문자나 SNS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는 한다. 보통은 만 원짜리 국제전화카드를 구입해서 오로지 수용 거실에 설치된 공중전화로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다.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받지는 못한다. 특히, 격리되어 혼자 갇혀 있는 Y 씨에게 전화는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그의 방 창문은 열 수 없게 되어 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은 세 달에 한 번, 외부진료를 나갈 때가 유일하다. 수갑이 채워지고 보호복을 입은 채 서너 명의 보호소 직원들의 감호를 받으며 ‘밖’에 나갔다 온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에서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들은 ‘형사범’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지내는 공간이나 그들이 다뤄지는 방식은 감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적절한 의료적 조치의 부재(不在), 끊이지 않는 사망사건

‘새우껍기’고문 피해자 M 씨가 극심한 치통에 대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삼푸를 두 병이나 마신 후였다. 현재 한 명의 의사가 최소 백여 명에서 많게는 3~4백 명 이상의 보호외국인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의료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야간과 주말에는 당직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비의료인이 환자상태를 판단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과 관련된 내과 전공의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

기본적인 의료검사 장비를 운용할 여력과 인력도 없어 간단한 질병도 외부병원에 나가지 않으면 검사할 수 없다. 외부병원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보호외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보호외국인들은 보호소에서 치료가 어렵다. 외부진료를 나갈 땐 보호복을 입고 수갑을 채워진 채로 가는데, 환자 본인과

5) 최계영, 「이주구금의 쟁점들」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 연구회 공동학술대회자료집, 2021년), 66-67쪽.

의사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통역도 없이 보호소 직원과 의사가 몇 마디 나누고 끝나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의료공백은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초래한다.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보호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12년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했고, 2015년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호송버스 안에서 밧데리를 삼키고 자살(?)했으며, 2019년에는 1년간 장기구금 중이던 이란 인 사망하는 사건이 터졌다. 2019년 사건의 경우, 사망 한 달 전부터 음식을 전혀 삼키지 못했고 하체에 심한 부종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당국은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았다.

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해 온 동료의 죽음 앞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무참함과 무력감에 압도되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실제로 보호일시해제되어 ‘밖’으로 나온 이들의 대부분은 중증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

‘새우깡기’고문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법무부의 2차가해


‘새우깡기’고문에 대한 보도가 나간 다음날, 법무부와 보호소 측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 당사자의 모습이 아닌 사진과 동영상은 언론에 유포하면서 대대적이고 공식적인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보호소 측은 피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그의 전력(前歷)을 문제 삼거나, “보호장비의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시도한 바 없는)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 엄청난 혐오성 댓글이 달렸다. ‘난동’을 부리는 외국인을 그럼 어찌란 말이나, ‘내국인’ 직원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냐 등등.

여기서 한 가지, ‘난동’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2021년 9월 28일, 대리인단 기자회견에서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생존자 이동석은 이번 ‘새우깡기’고문 피해당사자 M 씨가 보호소 ‘안’에서 보내온 전언을 대독했다. 법무부가 문제 삼은 ‘난동’에 대해서 M 씨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왔다.

“나는 난동을 부렸다.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겪은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말아 달라.”

아래의 법무부 보도자료의 문구들과 고문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의 편지내용을 비교해 보면, 무엇이 ‘안전’이고 ‘보호’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외국인보호소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갇혀 있는 이주민들이 국가안보에 위협이라도 가하고 있다는 것일까?

<2021년 9월 27일의 보도와 28일의 기자회견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반박문>

 법무부		보도 설명 자료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보도일시	배포 즉시 사용 가능	총 6 쪽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있음		
배포일시	2021. 9. 29.(수)	담당부서	법무부 이민조사과	
담당과장	박재완 과장	담당자	최연준 사무관 02)2110-4079	
<p style="text-align: center;">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 9. 28.(화),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 “보호소에서 「새우튀기」 고문” 주장에... “자해 막는 조치” 관련 - </p>				

AT HWASEONG DETENTION CENTER WHERE I EXPERIENCED A DANGEROUS INFRINGEMENT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THE STATEMENT OF THE FACTS WILL BE IN CHRONOLOGICAL ORDER.

* MARCH 31 : 10.30 AM TO 1 PM

* I'VE BEEN AGRESSED BY OVER THAN 10 IMMIGRATION OFFICERS, ONE OFFICER WAS PRESSING ON MY CHEST WHILE 2 OTHERS WAS STANDING UP ON MY LEGGS TRYING TO BROKE THEM.

1. LOCATION : IN FRONT OF TOKPANG 103.
 2. PROOF : CCTV RECORD.

* APRIL 6 : 1 AM TO 3 AM

* FOR THE SECOND TIME I'VE BEEN AGRESSED SAVAGERY BY OVER THAN 10 IMMIGRATION AND SECURITY OFFICERS, I WAS HANDCUFFS AND FEETCUFFS AT THE SAME TIME. A OFFICER PULLED ME FROM THE FEETCUFFS, HE INJURED ME ON MY RIGHT AMKLE.

1. LOCATION : TOKPANG 101
 2. PROOF : CCTV + MEDICAL REPORT HWASEONG HOSPITAL TRACE OF THE IFJURY ON MY RIGHT AMKLE.

28/6/2021 / [Redacted] (1)

<M 씨가 기록한 인권유린 관련 일지>

*** DETENTION CONDITIONS**

+ THIS PLACE SHOULD REPAIRED TO HWASEONGTAPPO,
AND ITS CRIME AGAINST HUMANITY.

+ WE START OUR DAYS WITH 1/2 BANANA AT 7.30.

* WE FINISH OUR DAYS WITH SLAVERY RYTUAL AT 9.30

1* FOOD: THE SAME BREAKFAST EVERY DAY SINCE
6 MONTHS FOR ME AND FOR YEARS TO OTHERS,

* NO RED MEAT AT ALL, NO FRUIT DESPITE 1/2 BANANA

* THE FOOD IS MORE APPROPRIATE FOR ANIMALS

* IM PRISON ALL SORT OF MEAT AVAILABLE EVEN
THE HALAL FOOD FOR MUSLIM.

2* EXERCISSE: WE ARE DEPRIVATE FROM EXERCICE
A TIME A WEEK FOR 20 MINUTES, WE SPEND THE
REST OF THE WEEK INSIDE THE COLLECTIVE CAGES.

* PRISON: 45 MINUTES EVERY DAY.

3* GENERAL HEALTH: MENTAL HEALTH, DIGESTIF PROBLETS
SKIM PROBLETS ARE EVERY WHERE, THE BEST JOKE
IS WHEN YOU WANT TO GO TO HOSPITALS, ONE
OFFICER ASK PEOPLE "ODI APA" THEM THE DOCTOR
ASK THE SAME QUESTION THEM "YAK" NO MORE
THAN 30 SECONDS WITH THE DO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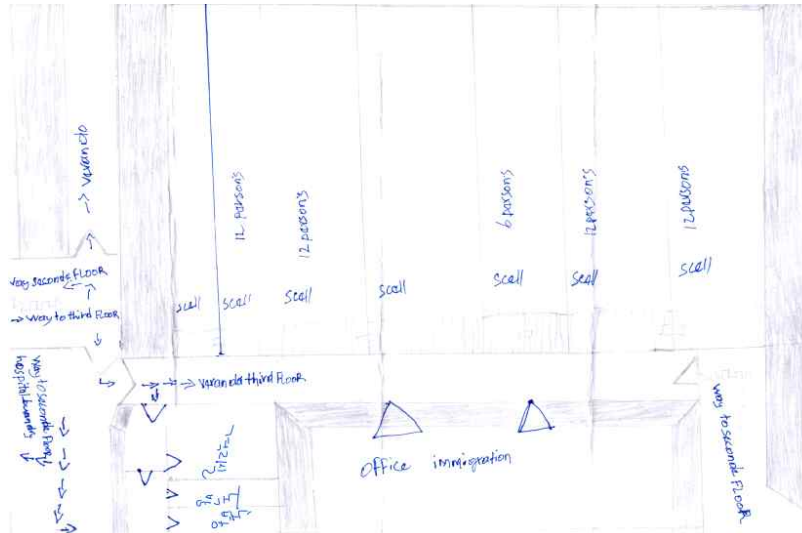
4* MART: OVER PRICED ITETS AND FOOD
DOUBLE THAN PRISON,

<M 씨가 기록한 보호소 내 음식, 운동, 건강, 매점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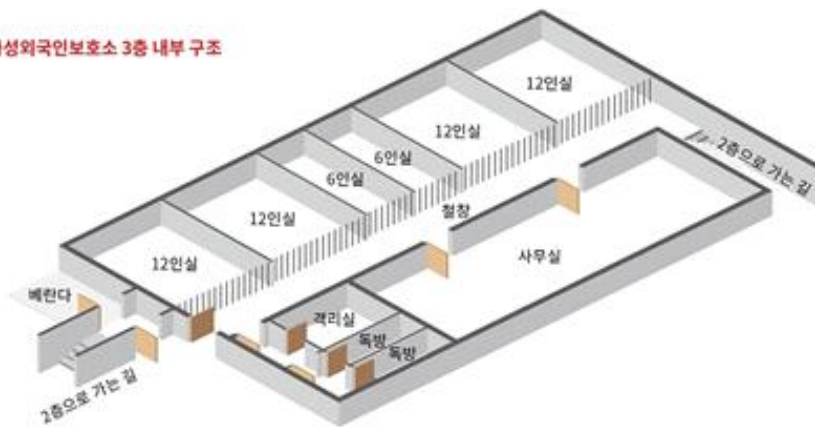
법무부가 보호소를 찾아가 다섯 차례의 조사를 하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가해자 집단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보도 후 외부진료를 나갔을 때, 보호소 측은 고문과 폭행을 주도했던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호송을 맡기기도 했다.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징벌/남용적 독방 감금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고, 관련된 시행세칙 등을 촘촘하게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계호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가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가두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절차적 기준'만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는 절차에 따라 독방에 가두고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입을 닫았다.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가해자 처벌도, 피해자 구제도 없다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호소 안에 구금된 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해오기 시작했다. 아래 그림은 현재 구금 중인 이주민이 보호소 내부를 그려 보내준 것을 디지털화한 것인데(시사인738호), 일렬로 늘어선 철장과 독방은 이곳이 '구금'을 위해 설계된

공간임을 말해준다. ‘수용거실’이라 부르는 방마다 쇠창살이 있고, 방과 방 사이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다.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내내 삼시세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한다. 같은 국적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한 방에 넣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로 운동시간도 일주일에 단 한 번 20분으로 제한되는 극한의 조건 하에서 과연 ‘신체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이런 ‘보호’를 원한단 말인가.



화성외국인보호소 3층 내부 구조



보호일시해제의 기만적 운용, ‘새우껍기’고문 피해자와 HIV감염인의 사례

‘새우껍기’고문의 피해자 M 씨는 인권유린으로 인한 건강악화, 고문 가해자와의 분리 등을 이유로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허통보를 보내왔다(이후, 특별보호일시해제로 재신청 후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

"귀하의 보호일시해제 청구사유를 검토하였으나, 피보호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발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 보호를 해제하여야 할 불가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허 결정함. 끝."(불허결정일: 2021/08/18 수원출입국·외국인청)

2021. 10. 25. 이민조사과

□ 질문 및 답변

※ 법무부 보도자료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관련

1. A씨가 가해 직원과 분리 요구한다고 들었다. 보호해제 계획 없는지.

-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법무부훈령 제1303호) 제4조(기본 심사 기준)에 따르면 피보호자의 범법사실,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등을 심사하여 보호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해당 외국인은 보호소 내 자해 시도 및 난폭행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보호일시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끔찍한 고문에 노출되어 인권침해가 있었음에도, 출입국으로부터 보호일시해제를 위한 ‘인도적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불허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태다. 최근 모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대한 법무부 이민조사과의 회신(위 붙임자료 참고)에서도 장기구금과 특별 계호 그리고 고문에 대한 안이한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보호시설에서의 ‘생활태도’ 등이 보호일시해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도된 바 없는 자해와 피해당사자로서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난폭행위’를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토록 까다로운 보호일시해제는 경우에 따라 ‘특별’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보호소 내에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받지 못한 외국인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매우 낮은 금액의 보증금만 내고 “데려가라”는 경우나 보증금/신원보증인 없이 보호일시해제가 허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가’라기 보다 보호 책임을 회피하며 ‘환자를 내쫓는’ 행태에 가깝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가슴통증과 혈변,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는 보호외국인 Y가 보증금/신원보증인 없이 황급히 ‘특별보호일시해제’된 사례가 있다. 몇 일 후 그는 대형병원에서 폐결핵과 HIV양성판정을 받았고, 병원은 보호소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보호소에는 비상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구금된 Y는 결핵치료가 완료되었음에도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8개월째 격리실에 혼자 갇혀 있다. HIV는 공기 중에서 감염되지 않는데도,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편견과 몰이해가 고스란히 외국인보호소에 녹아들어 ‘감옥 안 감옥’ 같은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격리실 구금 이후 Y의 보호일시해제 요청은 불허되었다(이후, 특별보호일시해제로 재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보호소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격리 8개월째.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화를 걸어오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일일 최다 23회. Y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창문인 전화통을 붙들고 가까스로 임계상황을 버티고 있다. 그의 삶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실에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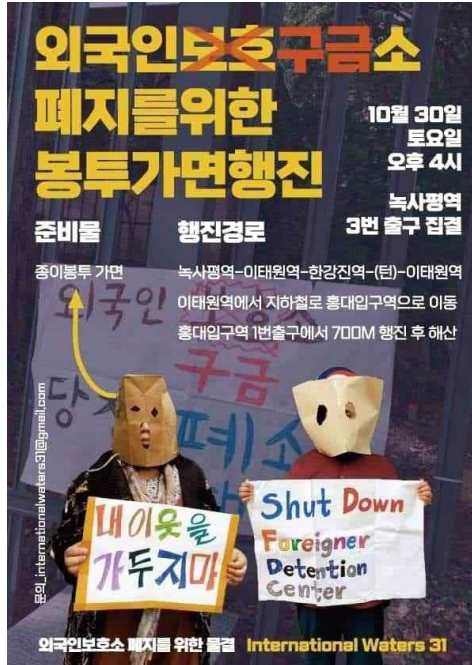
외국인보호소 폐쇄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asylum은 라틴어로 a(없는)와 style(체포할 권리)와 um(장소)의 결합으로, 불법이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추적자로부터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와 권리를 뜻한다. 지금도 ‘seeking asylum’이라는 표현은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⁶⁾ 그러나 ‘체포할 권리가 없는 장소’이어야 할 asylum은 종종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용소’로도 번역된다. 난민과 수용소는 붙여서 구사할 수 없는 단어다. 즉 ‘난민수용소’는 존립 불가능한 장소다. 그들은 범법자가 아니니 그곳은 감옥일 수 없기 때문이다. 체포될 수 없는 이들을 가두어야 하니 ‘보호’라는 기만적인 대리어(代理語)가 필요했을 것이다. ‘체포영장’이 아닌 ‘보호명령서’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법/제도적인 장치들이 수용소를 보호소로 둔갑시켜 운영하게 해온 것 아닐까.

이러한 이주구금은 정부 당국의 통치성에만 기대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구금’과 ‘추방’이 동시에 일어나는 외국인보호소는 비국민/비시민을 밀어내며(그러나 필요로 하며) 만들어지는 국민/시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략적인 무관심’으로 지탱된다. 구금의 대안은 없다. 외국인보호소는 폐쇄되어야 한다. 보호소의 시설과 처우개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보호소의 폐쇄를, 그리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갇혀 있는 모든 존재의 해방을 말해야 할 때다. 탈시설 운동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외국인보호소폐지를 위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외국인보호소~~~ 지금 당장 폐쇄하라!!!!”

“탈시설운동은 시설의 소규모화나 민주화가 아니라
 ‘시설폐쇄’를 목표로 한다.
 ‘누군가는 시설에서 살아갈 수(밖에) 있다(없다)’는
 전제 자체에 도전한다”
 (나영정, 『시설사회』 21쪽)

6) 어빙 고프먼 지음, 심보선 옮김 『수용소-정신병 환자와 그 외 채소자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에세이』 (문학과 지성사, 2018년) 449쪽.



<‘새우껍기’고문사건을 계기로 외국인보호소폐지를 주장하며 결성된 International Waters31>

<그 밖의 문제적 구금실태 :2021년 9월28일 기자회견 당시 제출된 보도자료 중에서>

1) 박탈당한 통신의 자유

현재 보호외국인들이 외부와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호실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와 인터넷실에 설치된 PC 뿐이다. 인터넷실 사용도 사용횟수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7개월간 코로나로 인해 면회가 제한되어 왔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통신이 허용되었다면 보호외국인들이 느끼는 고립감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을 것이다.

2)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보호복 착용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보호복’이라고 불리는, 교정시설의 수의복과 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보호소 당국의 운영에는 편리할 수 있으나 보호외국인의 인격과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일이다. 가족이나 친구들도 면회 때 ‘보호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커다란 충격을 받는다. 특히 외부 병원진료나 법원 출석 등을 할 때도 ‘보호복’을 입은 채 수갑을 차고 나가도록 되어 있다. ‘보호복’은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도록 하고 있는데, 세탁이 필요한 경우, 여벌의 옷이 없으므로 속옷 차림으로 빨래를 하거나 마를 때까지 그 상태로 기다려야 한다. 보호외국인에게 형사범을 연상시키는 ‘보호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보호소 내부에서조차 보장되지 않는 이동권

2000년 11월에 개소한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수용거실’이라 불리는 방마다 쇠창살이 있고, 방과 방 사이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서 24시간 내내 삼시세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한다. 코로나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운동이 주 1~2회로 한정되어 폐색감은 더욱 커졌다. 보호소 내부에서조차 이동을 제한하며 수용거실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호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일과시간 동안만이라도 수용거실의 철창을 개방하고, 보호소 내 의무실, 인터넷실, 도서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중 철창과 아크릴로 가로막힌 면회실

보호외국인을 면회 온 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이중 철창과 아크릴로 가로막힌 면회실 구조다. 대화조차 수화기를 통해 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한 사람만 면회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운영 구조는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특히 더 불편하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보호소의 면회실을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사건의 재발

2019년에도 특별계호실(징벌방, 독방)에 격리보호조치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이집트인 A에게 수갑, 머리보호대, 발목수갑을 채웠고,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A를 조력하던 난민인권센터는 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계구사용으로 A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0년 7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계구 사용 및 과도한 계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인정하면서, 법무부장관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장에 대하여 정책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사건 19진정0360200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이번 ‘새우껍기’ 고문사건은 1년 전의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재발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수법이 더욱 잔혹한 양상을 띤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이라는 말이 부끄럽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의 표현처럼, 화성외국인보호소는 ‘화성 관타나모’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의 국제인권규범 위반의 점

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1월 3일,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징벌적 독방구금 및 ‘새우껍기’ 등 고문 사건에 대하여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긴급 구제(Urgent Appeal)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유엔은 그 동안 미등록 이주민들의 구금과 관련, 최대 구금 기간이 입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모든 구금된 이주민들은 인도적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금번에 대책위가 진정을 제기한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1991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국제기준을 위반한 구금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당사국에 시정을 요청한다. ‘긴급 청원’ 제도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유엔 특별절차에 전해 국가가 신속하게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절차이다.

아래에서 금번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국제인권규범 및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의 진정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1. 관련 규범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자유권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종인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b)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 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c)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의 처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한 존중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구금자, 직원, 용역 제공자 및 방문자의 안전과 보안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

[건강권 관련]

제31조 ① 의사 또는 자격이 있는 보건의로 전문가는 질환을 앓고 있는 피구금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부상 문제를 호소하는 피구금자, 그리고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자 전원을 매일 진찰하여야 한다. 모든 의학적 검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의사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 계속된 구금으로 인하여 또는 구금에 수반된 상황 어느 것에 의해서든 손상되었거나 또는 손상되리라고 판단하는 때는 언제든지 교도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관련]

제47조

- ① 굴욕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쇠사슬, 발목수갑 또는 구속복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 ② 기타 보호장비는 법으로 정해 두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a) 호송 중 도피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용되는 경우. 다만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출석할 때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여야 한다. (b) 피구금자가 자기 또는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주는 것을 다른 수단으로써는 방지할 수 없어서 소장이 명령하는 경우.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의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보건의로 전문가에게 알리고 상급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 ① 제4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호장비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a) 보호장비는 보호장비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b) 보호장비는 위험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피구금자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 (c) 보호장비는 꼭 필요한 시기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피구금자에 대한 보호장비가 없을 때의 행동에 위험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정당국은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 및 그로 인한 침해를 줄이고, 보호장비 사용법을 교육하여야 한다.

[독방수용관련]

제43조

- ① 제한 또는 규율에 따른 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과 다름없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취급은 금지되어야 한다. (a) 무기한 독방격리수용 (b) 장기 독방격리수용 (c) 피구금자를 암실 또는 늘 불이 켜진 공간에 구금하는 행위 (d) 체벌 또는 피구금자의 식사·식수 공급을 제한하는 행위 (e) 집단 처벌

제45조

- ① 독방격리수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한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심사를 조건으로 하며 담당기관의 승인 이후에 처분할 수 있다. 피구금자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하여 독방격리수용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 ②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구금자에 대한 독방격리수용 처분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면 독방격리수용 부과는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에 대한 유엔 기준 및 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독방격리수용 및 유사처분의 금지는 이 규칙에도 적용된다.

2.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진정

본 사안에서 외국인보호소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습적 독방구금 및 새우껍기 고문을 행한 보호소의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018년 Revised Deliberation No. 5 on deprivation of liberty of migrants에서 발표한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들의 자유권 박탈 사례가 증가한 현상과 관련, 수정 심의안에서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범죄자로서 대우되어서는 안 되며 최대 구금 기간이 입법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모든 구금된 이민자는 인도적이고 인간존엄성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구금된 이민자는 정신 건강을 포함하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실무그룹은 지난 2020년 8월 일본의 Higashi Niho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에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구금된 이주민의 사안에서 보호소 측의 적절한 의료 조치 거부로 인해 피보호자의 정신적 건강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10명 이상의 보호소 직원이 제압을 위해 손목을 거칠게 낀 등 과도한 물리적 힘을 가한 것이 이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무그룹은 해당 보호 조치가 일본 국내법에 의해 합법적 권한이 주어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자의적임’의 의미는 ‘법에 어긋나는’이 아닌, 부적절함, 부정의, 예측 가능성의 미비, 적법절차의 원칙, 합리성, 비례성, 불가피성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 해석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지난 11월 1일 법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행해진 ‘새우깍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시인하였으며,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발생한 ‘새우깍기 고문’ 및 특별계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위법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재발 방지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명백한 인권침해 사실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보호해제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석방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한국 정부에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호일시해제를 하고,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문행위에 대한 사과, 정신적 신체적 배상 및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요청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이 사건발생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온 외국인 보호소 처우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진정을 제기할 것이며, 이후 사건의 진행에 따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개인진정 역시 고려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소위 ‘새우껍기’고문 등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책임자처벌, 관계당국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11월18일 현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사단법인 두루, 난민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민과 함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한국이주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장애여성공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